

10.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(안) 입법예고

재정경제부공고제1999-36호 1999. 3. 30

제정 이유

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 제정(1999. 1. 29, 법률 제5,692호)됨에 따라 채권유동화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인가기준에 관한 사항 및 주택저당증권의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주요 내용

- 가.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 채권유동화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인가기준중 최저 자기자본비율을 100분의 10으로 함.
- 나.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주택저당증권을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격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그 고유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 산출방식을 적용토록 함.
- 다. 금융감독위원회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의 적정성, 자산의 건전성 및 유동성 등에 관한 경영지도기준을 정하도록 함.

주택회보